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2.

발 의 자 : 서지영 · 서천호 · 박성훈
이종배 · 이현승 · 김대식
조승환 · 김성원 · 최수진
강승규 · 구자근 · 박수민
이진숙 · 조지연 의원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, 각 학급 당 특수교육교원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도 너무 많고,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특수학급 설치 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 기준을 낮추고, 특수학급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애 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, 의무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를 포함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- 나.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함(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19조제2항 단서 삭제).
- 다.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인, 초·중학교는 4인, 고등학교는 5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함(안 제27조제1항).
- 라.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을 대신하여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제3항 신설).
- 마. 교육감은 사립인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학급등 설치기준의 준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55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0호 중 “유치원”을 “어린이집·유치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”을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, 「유아교육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유치원”을 “어린이집·유치원”으로 한다.

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「영유아보육법」의 적용 특례)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정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“보육”은 “교육”으로,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은 “교육감 또는 교육장”으로 본다.

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7조의 제목 중 “각급학교의”를 “각급학교 등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급학교의 장”을 “각급학교 등의 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(종전의 제1호) 중 “4인”을 각각 “2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(종전의 제2호)

중 “6인”을 각각 “4인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7인”을 각각 “5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특수교육교원의”를 “특수교육교원 및 제3항에 따른 전담인력의”로 한다.

1. 어린이집 과정의 경우: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2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, 2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.

-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을 대신하여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특수학급 등 미설치에 대한 제재)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(이하 이 조에서 “특수학급등 설치기준”이라 한다) 이행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수학급등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에게 특수학급등 설치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③ 교육감은 사립인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, 그 밖에

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“특수교육기관”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<u>유치원</u> ·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고등학교(전공과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.	10. ----- ----- <u>어린이집</u> · <u>유치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1.·11의2. (생 략)	11.·11의2. (현행과 같음)
12. “각급학교”란 「 <u>유아교육법</u> 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	12. ----- 「 <u>영유아보육법</u> 」 제2조제3호에 따른 <u>어린이집</u> , 「 <u>유아교육법</u> 」----- ----- -----.
제3조(의무교육 등) 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「교육기본법」 제8조에도 불구하고 <u>유치원</u> ·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,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.	제3조(의무교육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어린이집</u> · <u>유치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제19조(보호자의 의무 등) ① (생략)

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. 다만,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의2(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「영유아보육법」의 적용 특별)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정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“보육”은 “교육”으로,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은 “교육감 또는 교육장”으로 본다.

제19조(보호자의 의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. <단서 삭제>

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 (생 략)

제27조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
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)

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
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
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
야 한다.

<신 설>

1. 유치원 과정의 경우 : 특수
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
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
고,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
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.

2. 초등학교·중학교 과정의 경
우 :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
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
을 설치하고, 6인을 초과하는
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
한다.

3.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: 특
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
학교 등의 특수학급 설치 기

준) ① -----각급학교
등의 장-----

-----.

1. 어린이집 과정의 경우: 특수
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2인
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
고, 2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
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.

2. -----
-----2인

-----2인-----
-----.

3. -----

-----4인-----
-----4인-----

-----.

4. -----
-----5인

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,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.

② (생 략)

<신 설>

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-----5인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을
대신하여 행정업무 등을 처리
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
다.

④ -----
--특수교육교원 및 제3항에 따
른 전담인력의-----
-----.

제27조의2(특수학급 등 미설치에
대한 제재) ① 특수학교와 각
급학교의 장은 제27조제1항 각
호의 기준에 따른 학급 및 특
수학급 설치(이하 이 조에서
“특수학급등 설치기준”이라 한
다) 이행사항을 교육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
출된 이행사항을 검토한 결과
특수학급등 설치기준에 미달한
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수학교
와 각급학교의 장에게 특수학

급등 설치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사립인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